

## 산학협력단 운영규정

제 정	2004. 9.
개 정	2019. 3.
개 정	2021. 3.
개 정	2022. 10.
개 정	2023. 10.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과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에 따라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능)** 본 대학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 등의 업무를 조정 및 지원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.

**제3조 (사업)**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수주 및 평가지원 총괄
4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5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6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7.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홍보
8.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·훈련
9. 산학협력관련 센터 및 연구소 운영에 관련된 업무
10. 그 밖의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### 제2장 조직 및 운영

**제4조 (조직)** ①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총괄 관리 감독한다.(개정 2021.03.09.)

②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과 산학협력실장을 둔다.(개정 2021.03.09.)(개정 2023.10.25.)

③산학협력단에서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R&D기획관리팀, 연구지원팀, 재무회계팀, 구매팀, 자산검수팀, 대외협력팀, 감사팀 및 부속기관을 두며, 팀별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21.03.09.)(개정 2022.10.13.)(개정 2023.10.25.)

④정관 제12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계약 및 회계처리 등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다.

⑤산학협력단에는 특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 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직

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(신설 2022.10.13.)

**제5조(부단장)** 부단장은 본 규정 제3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단장을 보좌하며, 제4조제3항의 부서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.(신설2021.03.09.)(개정 2022.10.13.)(개정 2023.10.25.)

**제5조의2(산학협력실장)** 산학협력실장은 제3조의 업무수행 및 제4조제3항의 부서 업무 추진에 관하여 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한다.(신설2023.10.25.)

**제6조 (평가)** ①산학협력단장은 각 사업단의 사업성과 및 추진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

②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.

1. 협약사항 이행여부
2.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달성 정도
3. 사업비 집행실적
4. 그 밖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7조 (구성)**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
②운영위원회는 대학 보직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8조 (기능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단 예.결산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단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, 국책사업의 신청.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5.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9조 (소집 및 의결)**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,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